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72

발의연월일 : 2019. 10. 31.

발 의 자 : 안호영・강훈식・윤호중
이규희・이용득・최인호
조정식・김상희・이석현
윤일규・제윤경・김현권
임종성・소병훈・김철민
금태섭・오영훈・김정호
노웅래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대중교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평가를 시행 중이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

가 미흡한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18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